

202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리즈 ④ 건물에너지효율설계 · 평가 1차 정오표 [2021.4.7]

[제1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페이지	항 목	오	정																																																		
3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페이지 교체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건물 에너지효율설계 · 평가</p> </div>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lt;개정 2019. 5. 13.&gt;</p> <h3 style="text-align: center;">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인증 등급</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명</td><td>:</td><td colspan="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td> </tr> <tr> <td>준공연도</td><td>:</td><td colspan="2">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td> </tr> <tr> <td>주 소</td><td>:</td><td colspan="2">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td> </tr> <tr> <td>층 수</td><td>:</td><td colspan="2">에너지자립률 합 계</td> </tr> <tr> <td>연 면 적</td><td>:</td><td colspan="2">대지 내</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td><td>:</td><td colspan="2">대지 외</td> </tr> <tr> <td>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td><td>:</td><td colspan="2">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 </tr> <tr> <td>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td><td>:</td><td colspan="2"></td> </tr> </tbody> </table> <h4 style="text-align: center;">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th> <th>자립률</th> <th>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th> <th>인증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53%</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ZEB 3</td> </tr> </tbody> </table> <p>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유무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td> <td><math>\Sigma(\text{에너지소비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math></td> </tr> <tr> <td>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td> <td><math>\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math></td> </tr> <tr> <td>에너지자립률</td> <td>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td> </tr> </tbody> </table>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인증기관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직인</span></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 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층 수	:	에너지자립률 합 계		연 면 적	:	대지 내		건축물의 주된 용도	:	대지 외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	인증등급		53%		ZEB 3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Sigma(\text{에너지소비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건축물 개요		인증 등급																																																			
건축물명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준공연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주 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층 수	:	에너지자립률 합 계																																																			
연 면 적	:	대지 내																																																			
건축물의 주된 용도	:	대지 외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	인증등급																																																		
	53%		ZEB 3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Sigma(\text{에너지소비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36 · 제1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10mm×297mm[백상지(150g/㎡)]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81

오른쪽 문제 추가

최고의 적응률 1위!!

**별표 1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등급 1+ 이상

$$2. \text{에너지자립률(\%)} = \frac{\text{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text{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times 1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움직를 완화 시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m<sup>2</sup>·년)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Σ[(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산·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15% 미만	15% 이상~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m<sup>2</sup>·년)  
= Σ(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3.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 성능지표 중 전기설비 부문 8.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 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다음은 신축 업무시설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사전 분석결과이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 1차에너지소비량을 최소 얼마 이상 줄여야 하는가?

〈보 기〉

-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시스템
-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800kWh/년
-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80kWh/년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2,75
- 평가면적 : 100m<sup>2</sup>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150kWh/m<sup>2</sup>·년
- 에너지자립률 : 13,2%

- ① 36kWh/m<sup>2</sup>·년
- ② 48kWh/m<sup>2</sup>·년
- ③ 51kWh/m<sup>2</sup>·년
- ④ 53kWh/m<sup>2</sup>·년

해설 1.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순생산량 = Σ[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 산·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 계수 / 평가면적  
→ (800kWh/년 - 80) × 2,75 / 100 = 9,8

2. 에너지 자립률 =  $\frac{9,8}{150} \times 100\% = 13,2\%$

3.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 얼마 이상 줄여야 하는가?

$$= \frac{9,8}{\frac{19,8}{100}} = \frac{20}{20} = 1980$$

$$= 99kWh/m^2 \cdot \text{년}$$

4. 150 - 99 = 51kWh/m<sup>2</sup>·년이 된다.

정답 : ③

**별표 2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 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 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 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 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페이지	항 목	오	정																		
87	③ 항목 5.추가	<p>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p> <p>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p> <p>3.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p> <p>4.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p> <p>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p> <p>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주택 :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p> <p>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p> <p>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3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p> <p>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p> <p>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p> <p>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p> <p>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수수료 납부기한</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b>별표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b></p> <p>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p> <table border="1" data-bbox="539 1137 1123 1391"> <thead> <tr> <th>전용면적의 합계</th> <th>인증 수수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85제곱미터 미만</td> <td>50만원</td> </tr> <tr> <td>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td> <td>70만원</td> </tr> <tr> <td>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td> <td>80만원</td> </tr> <tr> <td>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td> <td>90만원</td> </tr> <tr> <td>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td> <td>1백10만원</td> </tr> <tr> <td>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td> <td>3백90만원</td> </tr> <tr> <td>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td> <td>5백30만원</td> </tr> <tr> <td>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td> <td>6백80만원</td> </tr> </tbody> </table>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80만원	<p>제2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 87</p>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80만원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제1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CHAPTER

# 0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1 목적

####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필기 예상문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목적을 임기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요점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제문제 01

다음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한국에너지공단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환경부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한국에너지공단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답 : ①

103

전체 교체

페이지	항 목	오	정
104	전체 교체	<p><b>업무</b>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p> <p><b>필기</b> 예상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범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li> </ul>	<p><b>2 적용범위</b></p> <p><b>규정 제2조 【적용범위】</b>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p> <p><b>요점 적용범위</b>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b>에 따른다.</p> <p><b>예제문제 02</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가? ①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②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③ 설계검토서 ④ 건축법</p> <p><b>해설</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규정에 따른다. <b>답 : ②</b></p>

최고의 적중률 1위!!



**필기** 예상문제

인증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인증대상건축물을 판별하는 기준을 암기하여야 한다.

페이지	항 목	오	정
107	107페이지 전체 교체	<p><b>4 인증대상</b></p> <p><b>규정 제4조 [인증대상]</b></p> <p>①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 대상 건축물의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팔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단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li> </ol> <p>②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 신청 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b>요점 인증대상</b></p> <p>①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 대상 건축물의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팔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단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li> </ol> <p>② 인증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 신청 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제3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107</p>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109

109페이지 전체 교체

**5 신청 및 인증절차**

**규정 제5조 【신청 및 인증절차】**

- ①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인증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 등급 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자
  2.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
- ③ 삭 제
- ④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필기 예시문제**

신청 및 인증절차  
 •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요점 신청 및 인증절차**

- ①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 등급 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자

페이지	항 목	오	정
110	요점 항목 수정	<p style="text-align: right;">유형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0;"> <p>2.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p> <p>③ 삭 제</p> <p>④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div> <p><b>참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b></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6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b></p> <p>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p> </div> <p><b>예제문제 07</b></p> <p>다음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제도 운영규정에서 신청 및 인증절차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p> <p>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건축주 등에게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p> <p>④ 인증기관은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에 대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b>해설</b></p> <p>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③</p>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필기** 예상문제

- 용도프로필에 포함되는 내용을  
입기해 두어야 한다.
- 용도프로필 규정내용
  - 1. 사용시간과 운전시간
  - 2. 설정요구량
  - 3. 열발열원
  - 4. 실내공기온도(난방설정온도, 냉방설정온도)
  - 5. 월간 사용 일수
  - 6. 용도별 보정계수 등을 규정

**7** 인증 평가세부기준

**규정 제7조 [인증평가 세부기준]**

-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용도 프로파일과 기상데이터는 각각 [별표2], [별표6]과 같으며, 등급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 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용도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② 벽·바다·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호에 대해서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 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 기자재 신고 확인서]에 따른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요점 인증 평가 세부기준**

-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용도 프로파일과 기상데이터는 각각 [별표2], [별표6]과 같으며, 등급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별표 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2)의 용도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② 벽·바다·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호에 대해서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 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 기자재 신고 확인서]에 따른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12

7 인증평가세부기준,  
요점 수정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최고의 적중률 1위

**참고**

**[별표 6] 기상데이터**

1) 강릉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1.5	97.5	161.2	133.0	113.9	70.4	55.4	29.0	27.0	26.2
2월	2.5	139.7	179.6	149.3	141.0	92.6	85.5	44.4	42.7	35.9
3월	6.5	168.2	147.6	135.7	127.3	102.8	95.1	61.9	59.4	47.4
4월	14.0	198.6	120.9	129.8	119.3	116.5	106.7	80.6	77.2	56.4
5월	16.8	199.7	90.8	101.7	108.3	101.4	110.5	80.7	87.0	60.9
6월	22.1	160.8	69.8	83.2	76.9	87.5	78.8	75.0	69.0	58.4
7월	26.5	178.0	76.5	88.3	90.5	91.6	95.2	78.0	80.8	62.4
8월	24.6	174.2	95.3	106.2	93.0	100.7	84.9	77.3	68.2	57.3
9월	19.9	140.8	101.4	98.1	96.1	82.5	79.4	57.4	54.9	43.4
10월	15.6	126.5	134.4	116.2	109.3	80.1	74.9	44.2	43.8	37.1
11월	9.0	107.7	159.3	135.4	112.7	76.2	57.8	34.3	31.0	30.1
12월	3.7	96.1	174.6	134.3	130.8	65.7	63.1	27.4	27.3	25.8

2) 강화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3.5	95.8	142.6	111.9	111.0	61.5	60.9	31.6	31.6	29.7
2월	0.7	125.3	151.3	113.3	134.0	71.1	88.5	40.8	44.8	37.0
3월	4.3	166.7	142.6	119.0	118.9	80.2	80.0	49.2	49.0	43.8
4월	11.7	196.0	118.8	117.6	124.8	105.3	111.4	77.3	78.7	57.7
5월	15.6	213.7	95.5	107.8	114.9	108.3	117.0	87.0	92.3	64.8
6월	19.6	210.6	84.5	105.7	102.0	115.3	109.3	97.4	92.7	72.0
7월	23.1	161.0	71.7	76.3	87.7	76.9	92.6	66.7	77.5	57.7
8월	24.6	165.2	89.7	89.0	100.6	82.5	96.3	65.4	73.4	53.7
9월	19.5	160.3	117.4	104.9	117.4	85.9	98.7	60.7	66.4	50.1
10월	13.6	136.0	143.2	118.5	122.9	79.9	84.0	47.0	48.3	40.0
11월	7.7	112.9	164.2	127.7	129.4	71.0	72.5	34.9	35.5	32.2
12월	-0.3	90.4	151.4	113.1	119.3	56.3	61.1	27.9	28.5	26.9

페이지	항 목	오	정																																																																																																																																																																																																																																																																																																																
114	참고 내용 추가 및 변경	<p>114 • 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p> <p>3) 거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월</th> <th rowspan="2">월별평균 외기온도 [°C]</th> <th colspan="9">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sup>2</sup>]</th> </tr> <tr> <th>수평면</th> <th>남</th> <th>남동</th> <th>남서</th> <th>동</th> <th>서</th> <th>북동</th> <th>북서</th> <th>북</th> </tr> </thead> <tbody> <tr><td>1월</td><td>1.4</td><td>118.3</td><td>179.3</td><td>138.3</td><td>138.3</td><td>72.6</td><td>72.3</td><td>33.7</td><td>33.3</td><td>31.2</td></tr> <tr><td>2월</td><td>3.7</td><td>137.2</td><td>182.5</td><td>131.9</td><td>134.1</td><td>83.4</td><td>86.2</td><td>44.2</td><td>46.0</td><td>38.3</td></tr> <tr><td>3월</td><td>7.9</td><td>169.0</td><td>141.5</td><td>130.2</td><td>125.8</td><td>100.8</td><td>96.0</td><td>60.0</td><td>57.5</td><td>43.5</td></tr> <tr><td>4월</td><td>13.1</td><td>226.8</td><td>129.3</td><td>129.4</td><td>139.2</td><td>114.7</td><td>124.3</td><td>80.1</td><td>84.1</td><td>55.5</td></tr> <tr><td>5월</td><td>18.0</td><td>220.2</td><td>91.6</td><td>113.1</td><td>115.7</td><td>119.9</td><td>122.4</td><td>95.6</td><td>96.7</td><td>65.8</td></tr> <tr><td>6월</td><td>20.8</td><td>205.5</td><td>75.4</td><td>93.3</td><td>95.4</td><td>100.1</td><td>103.6</td><td>83.9</td><td>86.9</td><td>62.7</td></tr> <tr><td>7월</td><td>25.1</td><td>176.2</td><td>71.5</td><td>86.0</td><td>87.0</td><td>90.6</td><td>91.3</td><td>75.6</td><td>75.5</td><td>56.0</td></tr> <tr><td>8월</td><td>25.5</td><td>188.6</td><td>92.4</td><td>104.5</td><td>105.7</td><td>102.4</td><td>104.2</td><td>78.9</td><td>80.1</td><td>56.3</td></tr> <tr><td>9월</td><td>21.1</td><td>179.3</td><td>121.2</td><td>121.1</td><td>117.0</td><td>103.3</td><td>98.7</td><td>69.0</td><td>66.6</td><td>48.8</td></tr> <tr><td>10월</td><td>16.9</td><td>155.7</td><td>157.6</td><td>140.0</td><td>126.9</td><td>98.5</td><td>86.6</td><td>53.7</td><td>50.1</td><td>42.3</td></tr> <tr><td>11월</td><td>9.8</td><td>139.3</td><td>201.0</td><td>157.3</td><td>155.7</td><td>88.1</td><td>86.8</td><td>39.1</td><td>38.7</td><td>34.6</td></tr> <tr><td>12월</td><td>5.1</td><td>104.9</td><td>172.7</td><td>134.6</td><td>131.1</td><td>73.0</td><td>70.4</td><td>31.7</td><td>31.5</td><td>29.6</td></tr> </tbody> </table> <p>4) 거창 ~ 65) 해남 (내용 생략)</p> <p>66) 홍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월</th> <th rowspan="2">월별평균 외기온도 [°C]</th> <th colspan="9">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sup>2</sup>]</th> </tr> <tr> <th>수평면</th> <th>남</th> <th>남동</th> <th>남서</th> <th>동</th> <th>서</th> <th>북동</th> <th>북서</th> <th>북</th> </tr> </thead> <tbody> <tr><td>1월</td><td>-3.3</td><td>100.8</td><td>156.2</td><td>115.6</td><td>125.5</td><td>58.6</td><td>66.3</td><td>30.7</td><td>31.6</td><td>29.7</td></tr> <tr><td>2월</td><td>-1.6</td><td>119.6</td><td>147.7</td><td>113.4</td><td>129.3</td><td>69.7</td><td>83.6</td><td>39.6</td><td>43.4</td><td>34.8</td></tr> <tr><td>3월</td><td>4.0</td><td>152.2</td><td>126.2</td><td>109.1</td><td>114.8</td><td>82.4</td><td>87.9</td><td>54.6</td><td>56.7</td><td>46.6</td></tr> <tr><td>4월</td><td>10.4</td><td>200.5</td><td>122.4</td><td>119.2</td><td>122.6</td><td>100.8</td><td>106.5</td><td>71.1</td><td>75.9</td><td>55.4</td></tr> <tr><td>5월</td><td>17.4</td><td>226.2</td><td>100.6</td><td>115.7</td><td>122.8</td><td>115.3</td><td>126.9</td><td>89.2</td><td>98.5</td><td>64.7</td></tr> <tr><td>6월</td><td>21.2</td><td>222.0</td><td>87.6</td><td>102.1</td><td>115.3</td><td>107.1</td><td>127.3</td><td>89.6</td><td>104.9</td><td>71.5</td></tr> <tr><td>7월</td><td>24.1</td><td>156.3</td><td>67.8</td><td>69.4</td><td>85.0</td><td>68.0</td><td>89.4</td><td>58.5</td><td>73.2</td><td>51.7</td></tr> <tr><td>8월</td><td>24.2</td><td>202.7</td><td>106.7</td><td>115.0</td><td>120.3</td><td>107.7</td><td>116.8</td><td>80.6</td><td>88.1</td><td>59.5</td></tr> <tr><td>9월</td><td>18.5</td><td>139.4</td><td>106.0</td><td>90.0</td><td>102.3</td><td>69.2</td><td>81.9</td><td>48.3</td><td>54.0</td><td>42.4</td></tr> <tr><td>10월</td><td>11.4</td><td>145.4</td><td>153.3</td><td>124.1</td><td>139.9</td><td>85.5</td><td>96.5</td><td>52.9</td><td>52.6</td><td>41.2</td></tr> <tr><td>11월</td><td>5.1</td><td>85.4</td><td>118.9</td><td>85.3</td><td>108.7</td><td>50.6</td><td>70.8</td><td>30.4</td><td>35.5</td><td>28.2</td></tr> <tr><td>12월</td><td>-2.1</td><td>84.6</td><td>133.8</td><td>96.9</td><td>109.3</td><td>47.4</td><td>56.5</td><td>27.2</td><td>27.7</td><td>26.8</td></tr> </tbody> </table> <p>114 • 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p>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1.4	118.3	179.3	138.3	138.3	72.6	72.3	33.7	33.3	31.2	2월	3.7	137.2	182.5	131.9	134.1	83.4	86.2	44.2	46.0	38.3	3월	7.9	169.0	141.5	130.2	125.8	100.8	96.0	60.0	57.5	43.5	4월	13.1	226.8	129.3	129.4	139.2	114.7	124.3	80.1	84.1	55.5	5월	18.0	220.2	91.6	113.1	115.7	119.9	122.4	95.6	96.7	65.8	6월	20.8	205.5	75.4	93.3	95.4	100.1	103.6	83.9	86.9	62.7	7월	25.1	176.2	71.5	86.0	87.0	90.6	91.3	75.6	75.5	56.0	8월	25.5	188.6	92.4	104.5	105.7	102.4	104.2	78.9	80.1	56.3	9월	21.1	179.3	121.2	121.1	117.0	103.3	98.7	69.0	66.6	48.8	10월	16.9	155.7	157.6	140.0	126.9	98.5	86.6	53.7	50.1	42.3	11월	9.8	139.3	201.0	157.3	155.7	88.1	86.8	39.1	38.7	34.6	12월	5.1	104.9	172.7	134.6	131.1	73.0	70.4	31.7	31.5	29.6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3.3	100.8	156.2	115.6	125.5	58.6	66.3	30.7	31.6	29.7	2월	-1.6	119.6	147.7	113.4	129.3	69.7	83.6	39.6	43.4	34.8	3월	4.0	152.2	126.2	109.1	114.8	82.4	87.9	54.6	56.7	46.6	4월	10.4	200.5	122.4	119.2	122.6	100.8	106.5	71.1	75.9	55.4	5월	17.4	226.2	100.6	115.7	122.8	115.3	126.9	89.2	98.5	64.7	6월	21.2	222.0	87.6	102.1	115.3	107.1	127.3	89.6	104.9	71.5	7월	24.1	156.3	67.8	69.4	85.0	68.0	89.4	58.5	73.2	51.7	8월	24.2	202.7	106.7	115.0	120.3	107.7	116.8	80.6	88.1	59.5	9월	18.5	139.4	106.0	90.0	102.3	69.2	81.9	48.3	54.0	42.4	10월	11.4	145.4	153.3	124.1	139.9	85.5	96.5	52.9	52.6	41.2	11월	5.1	85.4	118.9	85.3	108.7	50.6	70.8	30.4	35.5	28.2	12월	-2.1	84.6	133.8	96.9	109.3	47.4	56.5	27.2	27.7	26.8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1.4	118.3	179.3	138.3	138.3	72.6	72.3	33.7	33.3	31.2																																																																																																																																																																																																																																																																																																									
2월	3.7	137.2	182.5	131.9	134.1	83.4	86.2	44.2	46.0	38.3																																																																																																																																																																																																																																																																																																									
3월	7.9	169.0	141.5	130.2	125.8	100.8	96.0	60.0	57.5	43.5																																																																																																																																																																																																																																																																																																									
4월	13.1	226.8	129.3	129.4	139.2	114.7	124.3	80.1	84.1	55.5																																																																																																																																																																																																																																																																																																									
5월	18.0	220.2	91.6	113.1	115.7	119.9	122.4	95.6	96.7	65.8																																																																																																																																																																																																																																																																																																									
6월	20.8	205.5	75.4	93.3	95.4	100.1	103.6	83.9	86.9	62.7																																																																																																																																																																																																																																																																																																									
7월	25.1	176.2	71.5	86.0	87.0	90.6	91.3	75.6	75.5	56.0																																																																																																																																																																																																																																																																																																									
8월	25.5	188.6	92.4	104.5	105.7	102.4	104.2	78.9	80.1	56.3																																																																																																																																																																																																																																																																																																									
9월	21.1	179.3	121.2	121.1	117.0	103.3	98.7	69.0	66.6	48.8																																																																																																																																																																																																																																																																																																									
10월	16.9	155.7	157.6	140.0	126.9	98.5	86.6	53.7	50.1	42.3																																																																																																																																																																																																																																																																																																									
11월	9.8	139.3	201.0	157.3	155.7	88.1	86.8	39.1	38.7	34.6																																																																																																																																																																																																																																																																																																									
12월	5.1	104.9	172.7	134.6	131.1	73.0	70.4	31.7	31.5	29.6																																																																																																																																																																																																																																																																																																									
월	월별평균 외기온도 [°C]	수평면/수직면 월평균 전일사량 [W/m <sup>2</sup> ]																																																																																																																																																																																																																																																																																																																	
		수평면	남	남동	남서	동	서	북동	북서	북																																																																																																																																																																																																																																																																																																									
1월	-3.3	100.8	156.2	115.6	125.5	58.6	66.3	30.7	31.6	29.7																																																																																																																																																																																																																																																																																																									
2월	-1.6	119.6	147.7	113.4	129.3	69.7	83.6	39.6	43.4	34.8																																																																																																																																																																																																																																																																																																									
3월	4.0	152.2	126.2	109.1	114.8	82.4	87.9	54.6	56.7	46.6																																																																																																																																																																																																																																																																																																									
4월	10.4	200.5	122.4	119.2	122.6	100.8	106.5	71.1	75.9	55.4																																																																																																																																																																																																																																																																																																									
5월	17.4	226.2	100.6	115.7	122.8	115.3	126.9	89.2	98.5	64.7																																																																																																																																																																																																																																																																																																									
6월	21.2	222.0	87.6	102.1	115.3	107.1	127.3	89.6	104.9	71.5																																																																																																																																																																																																																																																																																																									
7월	24.1	156.3	67.8	69.4	85.0	68.0	89.4	58.5	73.2	51.7																																																																																																																																																																																																																																																																																																									
8월	24.2	202.7	106.7	115.0	120.3	107.7	116.8	80.6	88.1	59.5																																																																																																																																																																																																																																																																																																									
9월	18.5	139.4	106.0	90.0	102.3	69.2	81.9	48.3	54.0	42.4																																																																																																																																																																																																																																																																																																									
10월	11.4	145.4	153.3	124.1	139.9	85.5	96.5	52.9	52.6	41.2																																																																																																																																																																																																																																																																																																									
11월	5.1	85.4	118.9	85.3	108.7	50.6	70.8	30.4	35.5	28.2																																																																																																																																																																																																																																																																																																									
12월	-2.1	84.6	133.8	96.9	109.3	47.4	56.5	27.2	27.7	26.8																																																																																																																																																																																																																																																																																																									
117	예제문제 12번 삭제	예제문제 12번 삭제																																																																																																																																																																																																																																																																																																																	
118	예제문제 15번 보기 ① 수정	① 국내 13개 지역에 대한 기상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① 국내 66개 지역에 대한 기상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페이지	항 목	오	정
119	7-2 ~ 7-3 추가	<p><b>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b></p> <p><b>규정 제7조의2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7조의 인증평가 세부기준에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신기술의 적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② 공단은 매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의해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연간 2회),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li> <li>③ 공단은 신청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li> <li>④ 공단은 제2항 따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li> <li>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선, 인증평가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ol> <p><b>요점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7조의 인증평가 세부기준에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신기술의 적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② 공단은 매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의해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연간 2회), [별표4]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다.</li> <li>③ 공단은 신청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li> <li>④ 공단은 제2항 따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li> <li>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선, 인증평가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ol> <p><b>예제문제 16</b></p> <p>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용규정에서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과 관련된 내용 중 공단은 신청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는가?</p> <p>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p> <p><b>해설</b></p> <p>공단은 신청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제출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답 : ③</b></p>	



페이지	항 목	오	정
-----	-----	---	---

10 인증기관 감독 등 변경 및 추가

**규정 제10조 【인증기관 감독 등】**

- ① 인증기관이 사업주체이거나 관련용역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해당 인증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인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관계법령 및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 인증기관 의견수렴(소명)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조치요구(처분)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통보된 처분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처분) 중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

**요점 인증기관 감독 등**

- ① 인증기관이 사업주체이거나 관련용역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해당 인증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인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관계법령 및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 인증기관 의견수렴(소명)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조치요구(처분)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통보된 처분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처분) 중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

**참고**

**[별표 5] 조치요구(처분)의 종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 개선, 권고 및 경고로 처분

조치요구 (처분)	내 용
통보	○ 인증업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하고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선	○ 인증업무 처리 관련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권고	○ 인증업무 관련 효율화,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보다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고	○ 규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 기준상의 위반 또는 부당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중대하여 향후 재발방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 ○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5건 이상의 '통보'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 점검(1회)결과 3건 이상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경우

페이지	항 목	오	정
139	18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②항 수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1.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의 적합성 3. 그 밖에 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1.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 2.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적용 <b>평가 방                      법의 적합성</b> 3. 그 밖에 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